##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공직비리 신고보상금 및 포상금제도 운용 불합리

소 관 기 관 감사원

조 치 부 서 ① 특별조사국 ② 민원조사단

내 용

특별조사국은 「공직비리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지침」(감사원 예규, 이하 '위 지급지침'이라 한다) 제4조 등에 따라 공직비리 해소에 기여한 자에게 보상금1)(이하 '신고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민원조사단은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감사원 훈령) 제23조 등에 따라 부패행위 적발, 예산 절감, 다중피해 예방 등 공익증진에 기여한 감사 제보를 제출한 제보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가. 신고보상금 지급기본액 산정기준 불합리

위 지급지침 제6조에 따르면 신고보상금은 비리행위의 중대성 등을 평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직비리 해소 등 공익증진 기여도 등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위 지급지침 [별표] "신고보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에 따르면 신고보상 금은 보상금 지급의 기본금액(이하 '지급기본액'이라 한다)에 제보자가 제출한 정

<sup>1)</sup> 감사원 신고보상금은 공직비리 해소 등 공익증진 기여도를 평가하여 포상하는 것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규정된 보상금(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금액에 일 정률을 곱하여 산정·지급)과 다름

보나 증거의 수준을 감안하여 최종 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급기본액은 처분요구별 기준금액에 인원수 또는 지적 건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 <처분요구별 기준금액>

- 통보(인사자료)·경징계(부지정)·수사참고자료: 200만 원, 강등·정직: 300만 원, 파면·해임·수사요청·고발: 400만 원
- 변상판정, 시정요구(금액): 처분금액에 따라 200만 원 ~ 1,000만 원
- 기타[권고·통보·주의·시정(기타)·개선요구]: 100만 원 ~ 300만 원

그런데 위와 같은 산정방식은 처분요구 등 지적 건수가 많으면<sup>2)</sup> 지급기본 액이 커지는 구조로서 단일 사건이라도 다수의 대상기관에 처분요구 등을 할 경 우 신고보상금을 많이 지급하게 된다.

또한,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 위주로 지급기본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단일 사건으로 비위행위자에 대하여 고발, 징계(파면·해임, 정직, 경징계) 및 주의요구한 경우에는 지급기본액이 최대 1,600만 원인 반면, 시정요구(금액) 등은 최대 1,000만 원, 권고·통보 등은 최대 300만 원에 불과하다.3)

그 결과 제보자가 공직비리 제보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방지 등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하더라도 단순히 지적 건수가 많거나 비위행위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있는 경우보다 오히려지급기본액이 적게 산정됨으로써 신고보상금을 적게 받을 수가 있는 등 공익증진 기여도 등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4)

<sup>2)</sup> 시효 경과 등에 따른 징계요구 외 주의요구 추가 또는 파견자에 대한 原 소속기관 장에 대한 징계요구 추가 등이 있는 경우 지적 건수 증가

<sup>3)</sup> 단, 단일 사건으로 비위행위자 징계처분(파면·정직·경징계), 고발·수사요청, 시정, 주의, 권고, 통보등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적 건에 대한 기준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지급기본액을 산정함에 따라 단일 사건에 대한 최대 지급기본액은 다를 수 있음

<sup>4)</sup>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 지급

## 나. 신고보상금과 포상금 산정·지급 시 제보자 간 형평성 고려 미흡

「공직비리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지침」제3조에 따르면 비리제보는 감사원에 접수된 제보로서 188신고제보, 기업불편신고제보 등 감사제보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신고보상금과 포상금은 모두 공직비리, 부패행위 등을 감사원에 제보하여 공직비리 해소, 부패행위 적발 등 공익을 증진한 제보자를 대상으로 기여도를 평가하여 포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고보상금과 포상금 모두 예산 항목도 포상금(감사활동경비-포상금)으로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액 산정·지급 시 제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특별조사국은 "가"항과 같이 위 지급지침 [별표] "신고보상금 지급액산정기준"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산정하는 반면, 민원조사단은 단순히 부서에 배정된 포상금 예산액5)을 포상대상자 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었다.6)

이에 따라 2018년 12월 특별조사국은 신고보상금으로 1인당 적게는 450만 원에서 많게는 2,510만 원까지 제보자 10명에게 지급하는 등 계 1억 1,000만 원 을 지급한 반면, 민원조사단은 포상금으로 제보자 5명에게 1인당 240만 원씩 계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기준을 6개의 개별기준(신분상 사법처분, 징계처분, 금전적 처분,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 기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방지,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 6개)으로 나누어 산정하되, 개별기준별로 최대지급 가능 금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상한액 2억 원으로 통일되게 운영

<sup>5) 2018</sup>년 기준으로 특별조사국은 1억 1,000만 원, 민원조사단은 1,200만 원임

<sup>6)</sup> 민원조사단은 관련 규정 없이 내부기준으로 "각 포상금 등 지급대상 평가 세부기준"을 두고는 있으나, "제보가 감사성과에 기여한 정도"(50점), "제보 동기와 배경"(20점), "공익증진 기여도"(20점), 기타 재무상·신분상 조치"(10점)으로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금액 산정기준이 없는 등 "신고보상금 지급액 산정기준"과 다를 뿐만 아니라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부서 포상금 배정 예산액에서 제보자 수를 단순히 나누어 산정하고 있음

그 결과 같은 감사제보라도 주관부서에 따라 포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등 제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관계부서 의견 ① "가"항과 관련하여 특별조사국은 추후 타 기관(국민권익위원회, 검찰 및 경찰 등)의 운용방식을 검토하는 등 신고보상금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나"항과 관련하여 민원조사단은 포상금은 감사제보를 조사·처리한 우수 공 직자도 포상 대상으로 하고 있는 등 신고보상금과 차이가 있어 신고보상금과 포 상금제도를 단순히 통합운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하면서 신고보상금과 포상 금제도는 재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대하여 특별조사국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연 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특별조사국은 향후 신고보상금과 포상금제 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 개정 등 개선방안을 민원조사 단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특별조사국장은 "가"항과 관련하여 공익증진 기여도 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공직비리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지침」[별표] "신고보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특별조사국장과 민원조사단장은 "나"항과 관련하여 서로 협의하여 신고보상금과 포상금을 산정·지급할 때 제보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